해외 법제 최신 동향

제 목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직업공무원의 파업금지를 합헌으로 판단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 6. 12. 기본법 상의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하여 파업금지 원칙이 인정된다면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함

1 사실관계

○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독일 3개 주 소속 공무원인 교사 4명이 근무시간 중 감독자의 허가없이 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징계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 등을 거쳐 공무원의 파업금지(Streikverbot für Beamte)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함

※ 공무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파업금지는 인권협약(Menschenrechtskonvention) 제11조에 규정된 노조결성권 등을 침해하므로 공무원의 지위가 아닌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파업금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äische Menschengerichtshof)의 판결을 근거로 공권력 행사와 무관한 교사의 역할 등을 주장하며 노조의 지원 하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2 관련 법률

○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9조 제3항은 노조결성권에 대하여, 제33조 제5항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의 파업권이나 파업금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각 주의 헌법(Landesverfassung) 또한 일반적인 파업권 보장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Saarland 주 헌법만 제115조 제5항에서 공무원의 파업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결정 내용

○ 국가가 정년까지의 신분보장, 퇴직 이후의 연금지급 등을 통해 공무원의 생계를 책임(Alimentationsprinzip)지는 대신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충실의무(Treuepflicht)를 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연혁, 임금을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가 아닌 법규로 정하는 특수성, 파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공무원의 업무영역과 가능한 업무영역 구분의 모호성 등을 고려할 때 직업공무원에 대하여는 파업금지 원칙이 인정되며, 이는 인권협약 내용과도 조화된다는 이유로 교사를 포함한 모든 직업공무원에 대하여는 파업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관련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함 ▧